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념 및 관리 체계 도입 등〉

■ 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16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념 및 안전 관리 체계 도입 등 ..... | 3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6. 25.

다. 회 부 일 : 2026. 6. 2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람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추론하여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단계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른바 “인공지능 에이전트”)이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위임 권한을 벗어난 작동, 외부 시스템 연계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위험 등이 동반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편,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정부의 시책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고,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

지능 에이전트를 개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의 사전 설정, 외부 시스템·도구 연계로 인한 위험의 평가 및 관리, 권한을 벗어난 작동 방지를 위한 사람의 관리·감독 및 기술적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위하여 컨설팅·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2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념 및 안전 관리 체계 도입 등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정부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안 제29조제1항제7호 신설),  
  
이를 추진할 때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 개정안은 사람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추론하여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단계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인공지능 에이전트”)을 개발·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이용자 또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의 사전 설정(제1호)
  -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와 연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오작동 위험의 평가·관리(제2호)
  -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나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제3호)

| 현행                                                                                                                        | 개정안                                                                                                                                                          |
|---------------------------------------------------------------------------------------------------------------------------|--------------------------------------------------------------------------------------------------------------------------------------------------------------|
|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① -----<br>-----<br>-----<br>-----<br>-----.                                                                                  |
| 1. ~ 6. (생략)<br><신설>                                                                                                      | 1. ~ 6. (현행과 같음)<br>7.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br>· 홍보 및 지원                                                                         |
| 7. (생략)<br><신설>                                                                                                           | 8. (현행 제7호와 같음)<br>② 정부는 제1항제7호의 시책을 추진할 때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신설>                                                                                                                      | 제32조의2(인공지능 에이전트에 관한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사람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추론하여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단계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인공지능 |

| 현행                          | 개정안                                                                                                                                                                                                                                                                                                                                                                                                                                                                                           |
|-----------------------------|-----------------------------------------------------------------------------------------------------------------------------------------------------------------------------------------------------------------------------------------------------------------------------------------------------------------------------------------------------------------------------------------------------------------------------------------------------------------------------------------------|
|                             | <p><u>에이전트”라 한다)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u></p> <p><u>1.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이용자 또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의 사전 설정</u></p> <p><u>2.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와 연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오작동 위험의 평가·관리</u></p> <p><u>3.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나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u></p> <p><u>②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관한 안전성 확보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컨설팅·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부 칙                         |                                                                                                                                                                                                                                                                                                                                                                                                                                                                                               |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나. 검토의견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용자의 개별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이 스스로 계획·추론하고 필요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활용되고 있음.
-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하는 논의와 관련 규범을 정리한 「Model AI Governance Framework for Agentic AI」<sup>1)</sup>에 따르면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일정 수준의 독립적인 계획 수립, 의사결정 및 행동 수행 기능을 갖춘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짐<sup>2)</sup>.
- 그 외에, 구글, OpenAI,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각각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자율성(독립성)과 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있음.

---

1)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이 2026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임.

2) There are certain common features - agents usually possess some degree of independent planning, decision-making, and action-taking (e.g. searching the web or creating files) over multiple steps to achieve a user-defined goal.

## <주요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 에이전트 정의>

|               |                                                                                                                                                                          |
|---------------|--------------------------------------------------------------------------------------------------------------------------------------------------------------------------|
| <b>구글</b>     |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추론, 계획, 기억 등의 기능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학습과 환경 적응을 통해 과업을 수행함 <sup>3)</sup>               |
| <b>OpenAI</b> | 자율형 에이전트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추론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여러 단계에 걸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책 준수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를 대신하여 독립적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함 <sup>4)</sup> |
| <b>엔비디아</b>   | 에이전트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임 <sup>5)</sup>                                                                                                                        |

- 개정안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의무와 규제를 신설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그리고, 국민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홍보 지원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하면서 이를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sup>6)</sup>과 연계되도록 함.

3) AI agents are software systems that use AI to pursue goals and complete tasks on behalf of users. They show reasoning, planning, and memory and have a level of autonomy to make decisions, learn, and adapt.

4) Autonomous agents are advanced AI systems that reason, plan, and execute multi-step tasks to meet a goal, with built-in privacy and policy controls for secure usage. Agents are systems that independently accomplish tasks on your behalf.

5) Agents are systems that independently accomplish tasks on your behalf.

6) 「디지털포용법」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조사·보급 및 연구
4.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5.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자율성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기 위한 권한의 위임 범위, 오작동의 예방 및 책임의 귀속 등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개정안은 이에 대응하여 ① 과도한 자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권한 범위를 설정하고 ② 외부 도구 활용에 따른 보안 위험과 오작동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③ 권한 범위를 벗어난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율체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임<sup>7)</sup>.
- 그리고,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역량’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의미<sup>8)</sup>하며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의 활용 역량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인공지능 활용 역량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한편,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별도의 법적 의무나 규제를 마련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앞서 인용한 「Model AI Governance Framework for Agentic AI」는 기업의 자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은 아님.

8) 「디지털포용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 첫째,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범위가 정리된 개념이 아니므로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려면 먼저 규제를 적용할 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관한 여러 논의에서는 자율성, 목표 지향성, 다단계 계획·수행 등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요소만으로는 규제대상인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에는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상용화된 주요 대형언어모델(LLM) 인공지능 시스템은 일정 수준의 자율적인 판단과 과업 수행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어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영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에 따라 규제대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둘째, 안 제32조의2제1항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의무인지 검토가 필요함.
- 먼저, 안 제32조의2제1항제1호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권한 위임 범위 및 한계의 사전 설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이용자가 제시하는 개별적인 과업을 달성하고자 개발·제공된 것이어서 적절한 권한 위임 정도가 개발 단계보다는 실제 이용 목적, 이용자의 지시 및 운영 환경에 따라 이용 단계에서 구체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발 단계에서 사업자가 개별적인 이용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권한 위임 범위 및 그 한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사전 설정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만약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설정하는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가 최소한의 한도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의무 이행의 가능성은 높아지나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자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전 설정 수준을 높게 요구하면 개발사업자는 의무 이행을 위하여 권한 위임 범위를 과도하게 좁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어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자율성과 활용 가능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리고, 안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 범위의 사전 설정(제1호)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사전 설정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제3호)가 현실적으로 개발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의무사항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같은 항 제2호는 ‘외부 도구와의 연계에 따른 보안 및 오작동 위험도 평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도구의 종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자가 요구하는 과업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에게 개발 단계에서 연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외부 도구에 대한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서 연계하는 다양한 외부 도구에 대해 개발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평가·관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 참고로, 「Model AI Governance Framework for Agentic AI」는 개편안과 유사하게 사전적인 위험 평가, 설계 단계에서의 외부 도구에 대한 접근 제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영향 범위 설정 등의 사항을 담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자율 규제에 성격을 가짐.
- 셋째,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일부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적용을 유예<sup>9)</sup>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아직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새롭게 개발·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9) 유예대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등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활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6년 하반기 중에 AI 전주기 안전·신뢰 기준 제시를 위한 「AI 에이전트 개발자 가이드라인」 및 국민의 AI 활용 주의사항을 담은 「AI 에이전트 안전 활용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 수용

- 정부가 국민의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인공지능 활용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하도록 한 개정안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함.
- 다만, 인공지능 에이전트 관련 규제 신설의 경우,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산업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인 점, 규제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범위 및 위험에 따른 관리 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된 뒤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제공 시 부과하는 권한 위임의 범위·한계 사전 설정, 보안·오작동 위험 평가·관리, 권한 초과 작동 방지 의무는 수범자의 의무 이행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권한의 위임 범위·한계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과업에 따라

“이용 단계”에서 결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제공 단계”에서 설정하기 곤란함.

- 그리고,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고도의 자율성과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므로 인공지능사업자가 단독으로 위험을 평가·관리하거나 ③ 권한 초과 작동을 상시 판별·방지하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의무 이행가능성이 낮음.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법적 의무 도입보다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관련 논의가 성숙될 때까지 글로벌 동향과 기술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 2)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구체적인 활용 양태가 정립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선제적인 규제 도입 여부는 시장 성숙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초기 단계에서의 선제적이고 사전적 안전 기준의 성급한 규제 적용은 오히려 기술의 적기 시장 진입과 글로벌 표준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

## 3) 한국인공지능소프트협회: 신중검토

-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법적 개념은 수용이 가능하나 단순 챗봇·자동화 서비스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 에이전트 활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신설 취지에는 공감

하나, 기술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의무 이행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곤란하  
므로 노력 의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230 |

※ 참고자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한국인공지능소프트협회 의견

| 구분   | 요약                                               | 내용                                                                                                                                                                                                                                    |
|------|--------------------------------------------------|---------------------------------------------------------------------------------------------------------------------------------------------------------------------------------------------------------------------------------------|
| 정의   | ‘에이전트’ 개념은 수용 가능하나, 적용범위 구체화 필요<br>(한국인공지능소프트협회) | 자율적 계획·추론, 외부 도구 활용 등 기본 방향은 수용 가능하나, 단순 챗봇·자동화 서비스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자율성 수준, 인간 개입 여부, 실행권한 범위 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      |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정의가 광범위<br>(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본 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는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범위의 인공지능 기능들을 포섭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함, 대통령령 위임으로 인해 규제 대상의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음                                                                                                                         |
| 의무   | 결과책임보다 노력의무 · 역할별 책임설계 필요<br>(한국인공지능소프트협회)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의무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술 현실상 결과 보장은 곤란하므로 노력의무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별 역할과 통제 가능 범위를 고려한 책임 분담이 필요                                                                                                                                  |
|      | 의무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이 낮음<br>(한국인터넷기업협회)                |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의 사전 설정 의무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기술적 특성상 이행이 어려움<br>개방된 인터넷 환경에서 연계하는 다양한 외부 도구와 API에 대해 개발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평가·관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실현이 어려움<br>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는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중복규제 | 기존 제도와와의 이중부담 방지 필요<br>(한국인공지능소프트협회)             | 에이전트 관련 의무는 현행 고영향 AI, 개인정보보호, 보안 규제 등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기존 의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중복 점검·문서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비가 필요                                                                                                                                   |
| 기타   | 위험기반 · 기술중립 규율 원칙 유지 필요<br>(한국인공지능소프트협회)         | 새로운 기술 유형마다 별도 규제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AI기본법의 위험기반 체계 안에서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 규율 원칙을 강화할 필요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